

## 03 공급자적합성확인

### Q 공급자적합성확인이란?

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는 제도입니다.

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제25조에 나와있습니다.

####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제25조

**제25조(공급자적합성확인 등)**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(이하 "공급자적합성확인"이라 한다)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(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며, 이하 "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"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연구·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
  2.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
  3.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- ②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·검사를 하여야 한다.
- ③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안전기준이 없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어린이제품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.
- ④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는 도형 또는 기호를 이용하여 어린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, 제품정보에 관한 표시의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⑤ 사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와 별도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·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표시의 방법에 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
- 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.
- ⑦ 사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·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⑧ 영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 Q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무엇인가요?

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해당하는 것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을 말합니다.

대상품목	적용안전기준
<b>1.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</b>	
어린이용 가족제품	· 어린이용 가족제품 안전기준 ·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
어린이용 안경테(선글라스를 포함)	· 어린이용 안경테 (선글라스를 포함한다) 안전기준 ·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
어린이용 물안경	· 어린이용 물안경 안전기준 ·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
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	·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안전기준 ·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
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	·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안전기준 ·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
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	·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안전기준 ·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
어린이용 스키용구	· 어린이용 스키용구 안전기준 ·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
어린이용 스노보드	· 어린이용 스노보드 안전기준 ·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
쇼핑카트 부속품	· 쇼핑카트 안전기준 ·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
어린이용 장신구	· 어린이용 장신구 안전기준 ·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
어린이용 키보드	· 어린이용 키보드 안전기준 ·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
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	·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안전기준 ·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
어린이용 가구	· 어린이용 가구 안전기준 ·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
아동용 섬유제품	·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·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
<b>2. 개별안전기준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</b>	
기타 어린이제품	·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

\* 품목별 적용 안전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 
(국가기술표준원 → 정책 → 제품안전 → 안전기준열람)

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제2조에 나와있습니다.

###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제2조

이표본규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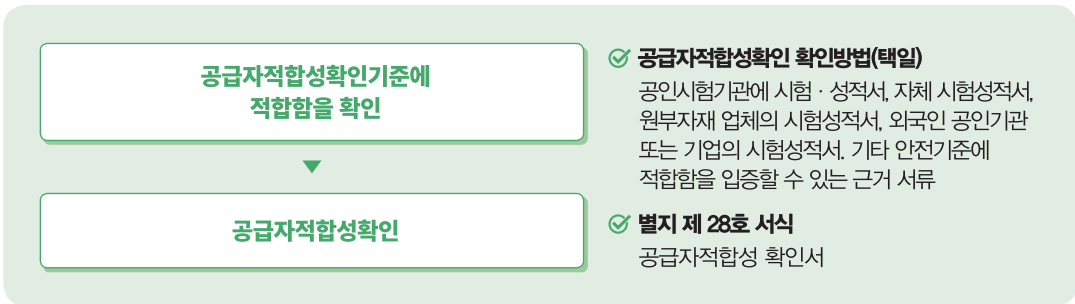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2. “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”이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을 말한다.

## Q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공급자적합성확인 ①시험기관에 시험·검사 ②제조·수입업자 자체 제품시험을 진행하여 공급자 스스로 제품 안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

제품의 안전을 확인한 제품은 확인서를 즉시 작성·비치하여야 합니다.



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40조 및 제43조에 나와있습니다.

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40조	
관급권포함	<p><b>제40조(공급자적합성확인 등)</b>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(안전기준상에 모델구분이 있는 제품에만 해당한다)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공급자적합성확인 후 별지 제2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 확인서를 즉시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</p>
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43조	
관급권포함	<p><b>제43조(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관련 서류 비치)</b>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조일(제조일을 알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일을 말한다)부터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제품의 설명서(사진을 포함한다)</li> <li>2.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검사 결과서(사진을 포함한다)</li> <li>3. 별지 제2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 확인서</li> </ol>

## Q 판매중지는 어떤 경우에 되나요?

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, 거짓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를 한 경우 등에 판매중지가 될 수 있습니다.

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제34조에 나와있습니다.

###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제34조

#### 제34조(판매중지등의 명령 등)

③ 시·도지사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.

1.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
2. 제25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(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)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
3.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·진열 또는 보관을 한 경우
4.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
5.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한 경우
6.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

